

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5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☐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반환 및 반환금액에 대한 처분

☐ 예정된 처분의 원인 및 내용

- (처분원인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
- (처분내용) 손실보상금 반환 및 반환금액 납부*

* 정확한 반환금액, 납부계좌 등은 '소상공인손실보상.kr'에서 확인 가능

☐ 법적 근거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

☐ 공고 기간 : 2026. 9. 15.(화) ~ 2026. 9. 29.(화)

☐ 공시송달 대상 : 별도 첨부[별첨1]

☐ 의견제출[별첨2]

- (제출처)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

(☎044-204-7843, 044-204-7897, 042-363-6892, 042-363-6882)

- (제출방법) 우편, 팩스, 전자우편

구분	상세
우편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(어진동), 파이낸스센터 3차
팩스	044-204-7848
전자우편	msscompensation@korea.kr

- (제출기한) 2026년 10월 12일(월)까지

□ 유의사항
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 -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 문의

- 분기별 손실보상 금액 및 감액 산출내역, 납부계좌 등은 손실보상 누리집 '소상공인손실보상.kr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533-3300(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[별첨1] 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.

[별첨2] 의견제출서 1부.

[별첨1] 손실보상금 정산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

순번	대표자명	사업자등록번호	상호명(법인명)	원인 분기	처분원인
1	김*환	603-20-66264	세컨드노래주점	'21년 3분기	방역조치위반
2	김*남	533-68-00136	써니가라오케	'21년 3분기	방역조치위반
3	박*선	784-42-00277	역전	'21년 3분기	방역조치위반

[별첨2] 의견제출서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 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